

건설정책리뷰 2013-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활성화 방안

이보라 · 홍성진

2013. 1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쌍무계약적 원칙에 입각하여 의무화하고 있으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률은 90%를 상회하나,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교부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하수급인의 보다 확실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기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제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기한을 명시(30일 이내 발급)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 역시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2) 신용등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삭제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 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 하도급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산법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 신설
 - (4) 보증기관 약관에 추가보증제도 명시
 - 관련 각 보증기관의 약관에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 규정을 명시하도록 함
 - (5) 보증기간 명시
 -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로 보증기간을 명시함

목 차

1. 서 론	1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분석	3
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연혁 및 내용	3
2.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연혁	3
2.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내용	4
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절차	6
2.3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약관 분석	9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실태 및 문제점	17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실태	17
3.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예외 기준의 타당성 문제	19
3.3 행정제재의 체계정합성	22
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추가보증제도의 미비	23
3.5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 조정 필요	28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사항	30
4.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제고방안	30
4.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발급기한 명시	30
4.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이행보증 청구 제한	31
4.2 신용등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삭제	32
4.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정비	34
4.4 추가보증제도의 약관 명시	35
4.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명시	36
5. 결론	39
참 고 문 헌	40

표 목 차

<표 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범위	5
<표 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예외 규정	6
<표 2-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7
<표 2-4> 주요보증기관의 보증책임 관련 약관 규정	10
<표 2-5> 주요보증기관의 면책조항 관련 약관 규정	10
<표 2-6> 주요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 관련 약관 규정	12
<표 2-7> 주요보증기관의 기성인정 기준 관련 약관 규정	15
<표 2-8> 주요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시기 관련 약관 규정	16
<표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17
<표 3-2>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19
<표 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 현황	20
<표 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 중 부도업체	21
<표 3-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미이행시 행정제재 비교	22
<표 3-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사비 증액만 있을시 추가보증 산정방법	25
<표 3-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기연장만 있을시 추가보증 산정방법	26
<표 3-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기연장 추가보증 산정방법	26
<표 3-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사비 증액 추가보증 산정방법	27
<표 3-10> 하도급공사의 수취어음중 평균 만기일이 90일 이상인 어음 비율	28
<표 4-1>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발급기한 명시관련 개정안	30
<표 4-2>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이행보증 청구 제한 관련 개정안	31
<표 4-3> 건산법시행규칙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관련 개정안	33
<표 4-4> 건산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행정벌 관련 개정안	35
<표 4-5>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명시관련 개정안	37

그 립 차 례

[그림 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운영절차 8

1. 서 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체불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도급계약시에 하도급계약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수급인이 발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원·하도급간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무화하고 있음
 -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원·하도급간 계약이 신의성실의 관계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은 계약금액의 10%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은 거의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행위는 담보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수급인인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률은 90%를 넘고 있는 반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이행이 저조한 실정임

- 이처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있으나,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비율은 저조한 실정인 반면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계약보증비율은 매우 높은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하수급인에게 보다 확실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분석

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연혁 및 내용

2.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연혁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시에 하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수급인이 발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는 제도임
-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제3자(하수급인)를 위한 수급인과 보증기관과의 계약임¹⁾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관련 법령은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화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 체불행위를 방지하고자 1997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에서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연쇄부도 또는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등을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음

1)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36599.

- 1997년 이전에는 수급인의 부도, 파산 등 대금지급 불능 사유 발생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였음
- 다만, 1994년부터 (구)건설공제조합법령에서 임의적으로 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규정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취급하여 왔었음((구)「건설공제조합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내용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원·하도급간의 계약이 신의성실의 관계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쌍무계약적 원칙²⁾에 입각하여 의무화하고 있음
 - 계약이행보증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유가증권의 형태로 보증기관의 명의로 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계약이행보증과는 상반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금금을 공제한 기성금의 지급이행을 보증기관의 명의로 보증³⁾

2) 쌍무계약의 당사자 각자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은 쌍무계약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원립, 「민법강의」, 홍문사, 2012, 1336쪽. 이러한 내용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5항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28쪽.

(1) 보증범위 및 보증기관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표2-1>과 같이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표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text{월수} \times 2$

- 이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보증은 현금의 지급 또는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⑤ 그 밖에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2) 지급보증 의무에 대한 예외

- 현행 건설법 및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의 <표2-2>와 같음

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표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예외 규정

건설법시행규칙 제28조 (2014.1.1. 시행)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 (2014.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⁵⁾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절차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전술한 <표2-1>의 하도급대금 범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다음의 <표2-3>과 같음

5)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표 2-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808호

1. 적용기준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 ~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 ~300억원미만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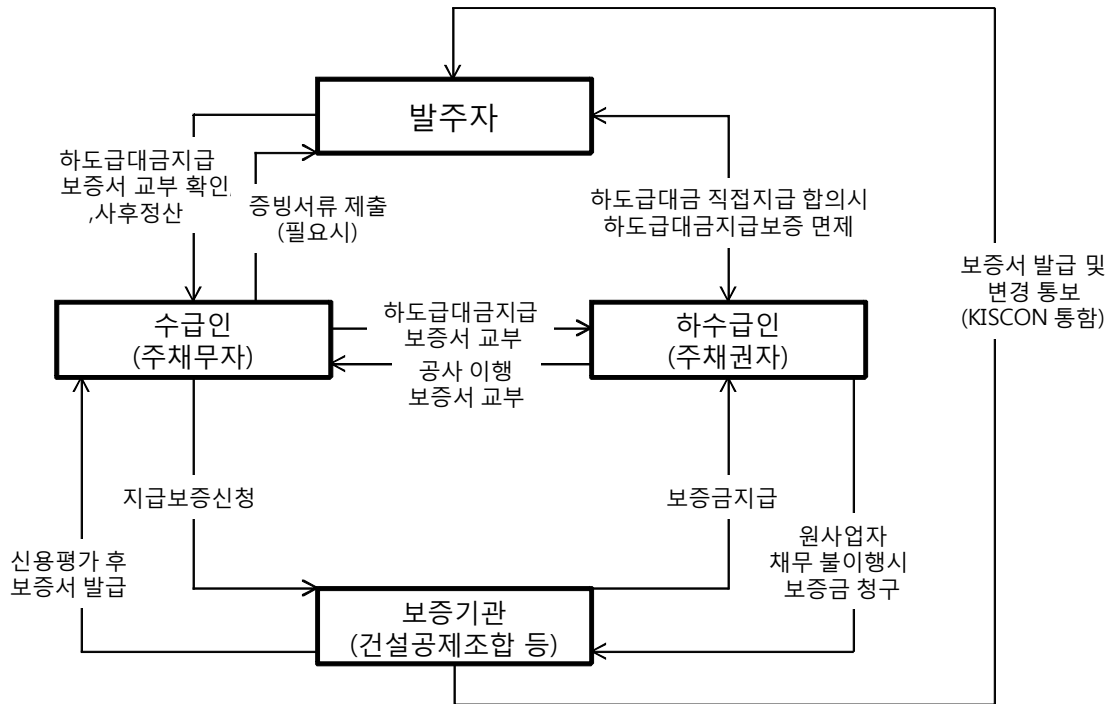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발주자는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일련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음



[그림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운영절차⁶⁾

6) 이정호·박현석·김영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제12호, 대한건축학회, 1999, 130쪽 그림1 수정

2.3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약관 분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짐
- 주요 보증기관으로는 ① 건설공제조합, ② 전문건설공제조합, ③ 서울보증보험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해당 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상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부분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관련 약관은 보증책임, 면책조항,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보증채권자의 의무,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보증금 지급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음

(1) 보증책임

- 보증기관은 채무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증사고 발생시 상대방(하수급인)에게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 채무를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표 2-4> 주요보증기관의 보증책임 관련 약관 규정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조(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앞면 기재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합니다.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2) 면책조항

- 보증기관은 불가항력적 사고, 보증채권자(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보증목적 이외의 보증서 사용,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표 2-5> 주요보증기관의 면책조항 관련 약관 규정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제11조(면책조항)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p>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p> <p>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p> <p>4.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무자격자 등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p> <p>5.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p>	<p>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p> <p>4.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p> <p>②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1.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p> <p>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p>	<p>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침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p> <p>2.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p>
--	--	--

○ 면책조항의 내용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무자격자 등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의 경우, “무자격자”와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를 구분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적법한 하도급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반하여 부당하게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⁷⁾를 명하였으나, 자구수정 형식에 그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됨

○ 즉, 법원은 “무자격자”의 경우에는 보증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가 하도급 받

7) 사건번호: 2008약관1334(시정권고: 제2008-055호).

은 공사인 때”의 경우에는 보증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바,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면책사유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를 정한 경우, 그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계약의 당사자인 보증기관의 조합원들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다88221).
- “ 부적법한 하도급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지급보증인을 면책시킨다면 위 보증서 발급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의 부적법성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지 않는 한 하도급의 부적법성만으로는 지급보증채무가 면책될 수 없다(대법원 2001.04.10. 선고 99다58372 판결)

(3) 보증책임의 범위

- 보증기관은 보증책임의 범위 내지 이행한도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이행기일내에 실제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중 미수령액으로 정하고 있음

<표 2-6> 주요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 관련 약관 규정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중 미수령 채권	제3조(보증책임의 범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이행기일내에 실제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중 미수령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기한의 이익상실, 지연손해금의 배상 등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p>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채권자(하수급인)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3. 보증사고 발생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 4. 채무자의 기성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 5.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p>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의 사전동의(보증기간 연장등) 없이 지급기일 연장, 다른 어음의 발행·배서 등 당초의 지급기일을 사실상 연장하는 경우의 해당채무 2. 보증사고 발생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3. 채무자의 기성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 4.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5.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p>따릅니다.</p> <p>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p> <p>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	---

- 다만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및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증채무의 이행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 기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판단하였음

“지급보증은 보증책임한도 및 보증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계약에 따라 보증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며 어음만기일이 보증기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어음채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원인채권은 보증기간내에 발생하였으므로 보증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 동 보증의 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함에도 동 약관조항은 사실상 확정되어 조합측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보증책임까지도 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채권자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정된다”(사건번호: 9802약이0203(소회의 의결: 제98-121호).

- 대법원은 이와 달리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수급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것은 피고가 판매하는 보증상품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약관 제3조 제2호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만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4)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함

<표 2-7> 주요보증기관의 기성인정 기준 관련 약관 규정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제7조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보증사고 발생시 기성고 인정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의 기성고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대상공사의 원도급 계약이 불이행된 때에는 원도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보증대상공사의 원도급	-

	계약불이행 등이 없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원도급의 발주자 가 인정하는 기성실적 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이 경우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사고 발생 일까지의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5) 보증금 지급시기

- 보증금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고 있음

<표 2-8> 주요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시기 관련 약관 규정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제9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한 기성금 중 보증채권자가 미수령한 확정기성금은 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증금의 지급시기)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실태 및 문제점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실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비율은 저조한 반면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계약보증비율은 매우 높음
 - 전체 하도급계약 건수: 38만 2,983건(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기준 대비)
계약이행보증건수 비율: 93.6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수비율: 35.79%
(전문건설협회 2005년~2009년 건설보증기관들의 지급보증 발급현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공공공사의 경우 30~40% 정도이며, 민간공사는 대체적으로 공공공사보다 낮은 수준 이임. 특히 2012년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이 26.9%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교부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1> 참조)

<표 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공사	31.4	46.8	47.9	41.4	40.5
민간공사	36.0	32.8	43.7	49.1	26.9

출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 참조

※ 조사당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기준은 하도급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 기준임

- 심지어 건설공사 진행시 1건의 원도급공사 수행중 가장 많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수는 160건의 하도급공사인 사례도 있음
 - 1 건의 원도급공사시 수급인이 75개의 하수급인에게 160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하도급공사금액 21,044백만 원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2006. 3. 13.부터 2008. 7. 20.까지 기간 ○○건설(주) 등 75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160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2009년 9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내용중 일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중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합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46.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수급인과 합의하에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실상 하수급과 수급인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표 3-2> 참조)
-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거부한다는 응답 33.4%와 합의하에 미교부된 비율인 46.6%를 더하면 80.0%로 여전히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하도급간 불평등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3-2> 참조)

<표 3-2>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 체 수 (%)	
수급인의 교부 거부	124	(33.4)
당사가 계약 보증 이행을 미제출	20	(5.4)
지급보증서 발급은 되었으나 실제 교부되지 않음	54	(14.6)
수급인과 합의에 의해	173	(46.6)
합 계	371	(100.0)

출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보고서(2013) p.135 참조

3.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예외 기준의 타당성 문제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수급인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즉,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로서,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는 아래의 <표3-3>과 같이 약 3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상태가 우수한 신용평가 A 등급 이상의 업체는 부도위험이 낮으므로,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여 신용 등급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채 평가 A-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면제요건 중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하여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 지급 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어 수급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A0이상으로 개정하였다.

<표 3-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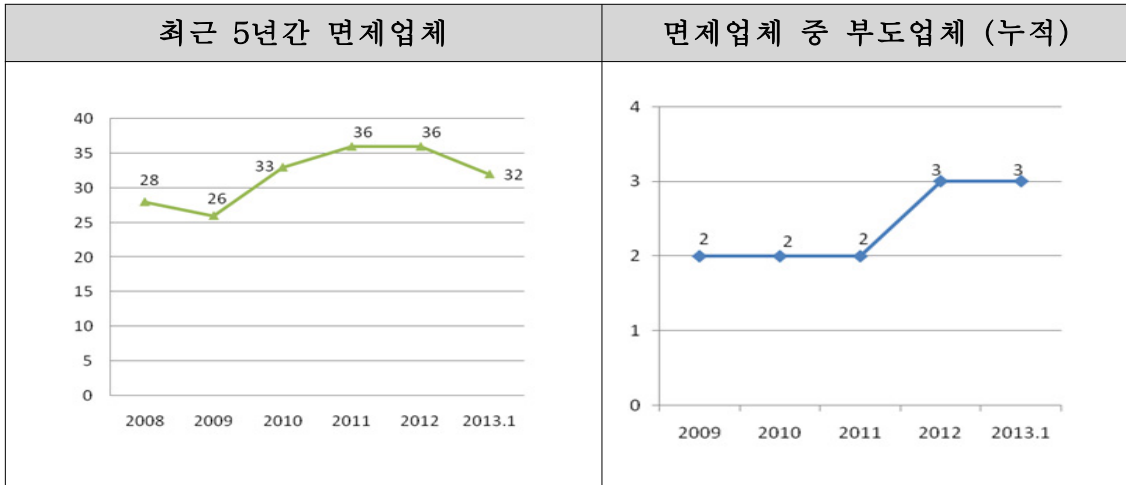
(2013. 7. 30 기준)

연번 (가나다순)	상 호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비고
		한기평	한신평	NICE평	
1	대림산업(주)	AA-	AA-	AA-	
2	(주)대우건설	A+	A+	A+	
3	대우조선해양(주)	AA-	AA-	AA-	
4	두산중공업(주)	A+	A+	A+	
5	롯데건설(주)	A+	A+	A+	
6	삼성물산(주)	AA-	AA-	AA-	
7	삼성중공업(주)	AA	-	AA	
8	(주)서브윌	AA-	AA-	-	
9	에스케이건설(주)	A	A	A	
10	(주)엔에이치개발	A-	A-	-	
11	지에스건설(주)	A+	A+	A+	
12	지에스네오텍(주)	A-	-	A-	
13	(주)케이씨씨건설	A	A	-	
14	(주)케이티네트웍스	-	A	A	
15	코웨이(주)	A+	-	A+	
16	(주)태영건설	A	-	A	
17	(주)포스코건설	AA-	AA-	AA-	
18	(주)포스코엔지니어링	A+	-	A+	
19	(주)포스코캠텍	-	AA-	AA-	
20	한국전력기술(주)	AA	-	AA	
21	(주)한진중공업	A-	A-	A-	
22	(주)한화건설	A	A	A	
23	현대건설(주)	AA-	AA-	AA-	
24	현대로템(주)	A+	A+	A+	
25	현대산업개발(주)	A+	A+	A+	
26	현대엔지니어링(주)	A+	A+	-	
27	현대엘리베이터(주)	-	A	A	
28	현대엠코(주)	A+	A+	A+	
29	현대중공업(주)	AA+	AA+	AA+	
30	(주)효성	-	A+	A+	

(대한건설협회 자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에서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표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 중 부도업체



- 구체적으로 위의 <표3-4>와 같이 한 해 동안 26~36개의 업체가 지급 보증을 면제받고 있으나, 이중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개 업체 (고려개발, 삼호, 삼환기업)가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⁹⁾ 2014년 1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쌍용건설이 기업회생(법정관리) 결정을 받음¹⁰⁾
- 이렇듯 오늘날 건설경기의 불황 및 침체 속에 건설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수급인)의 신용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사이행도중 신용등급 A 이하로 강등되거나 또는 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9) 김지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방안 관련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연구 13-25-9, 한국법제연구원, 2013, 65쪽.

10) 이 밖에 시공능력평가 100순위 내의 건설기업 중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기업은 약 22개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광·박승국·홍성진, “건설기업 회생절차 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3, 15쪽 이하.

3.3 행정제재의 체계정합성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인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시 일정한 행정제재 규정을 갖추고 있음
- 양 법률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특히 행정벌¹¹⁾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은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3-5>와 같음

<표3-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미이행시 행정제재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조항 없음 ● 시정명령(제81조) ●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제30조) ● 시정조치(제25조) ● 하도급대금 2배 이하 과징금(제25조의3)

-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임
- 결국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정합성은 해당 공사가 어느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제재에 차이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11) 행정벌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말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형벌을 그 제재내용으로 한다: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519쪽.

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추가보증제도의 미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7장(제54조~제68조) 이하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규정하면서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에 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각 보증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에 대한 약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내용은 전술한 “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의 약관 분석”과 같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보증기관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서 주채무의 이행기일을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은 변경되지 않음
- 따라서 이 경우 추가보증서의 작성 또는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포함한 건설관련 보증에 있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자료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가 수급인인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한 계약이행보증중 추가보증을 한 건수는 2012년 한 해 동안 총 67,411건임

- 계약이행보증의 추가보증중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보증 건수: 총 36,579건,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추가보증건수: 총 30,832건
- 계약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상호보증개념으로 계약이행보증이 2012년 동안 67,411건이 이뤄졌다면, 그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이와 동일한 건수가 발생한 것임
- 앞서 언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을 대입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추가보증 건수는 계약이행보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비율이 35.79%를 감안하면, 계약이행보증건수 67,411건 일 경우, 추가보증관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수는 약 24,126건($67,411 \times 35.79\%$)으로 추정되며, 추가보증이 법제화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지급 추가보증비율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일 것으로 판단됨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 ‘제3조 보증채무 이행한도’에서 보증기간이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보증기간을 넘은 어음만기일의 어음은 부도 처리되어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하수급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약관에는 ‘추가보증제도’가 필수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며, 위반시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내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채무의 이행기일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보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규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과 관련하여 이러한 추가 보증에 관한 내용은 없음

- 다만, 보증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추가보증을 규율하고 있는바,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건설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추가보증 발급 지침은 다음과 같음
 - (1) 당초발급현황
 - 당초보증서 발급현황 예시
 - 보증금액: 200,000,000원 계약금액 300,000,000원
 - 공사기간: 2007.1.1~2007.6.30(공사기간 6월)
 - 보증기간: 2007.1.1.~2007.6.30. 기성주기: 2월, 선금금: 무

 - (2) 증액 보증서 발급방법(계약금액 1억원 증액, 공기연장은 없음)

<표 3-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사비 증액만 있을시 추가보증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 + 추가계약금액 4억원 = 3억원 + 1억원
보증금액	당초 계약금액과 추가계약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보증금액을 산출한 후 당초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66,666,666원 = (4억원/6(공사기간)×4)-(2억원)
보증기간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 (3) 공기연장 보증서 발급방법(2007.7.31까지 연장)

<표 3-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기연장만 있을시 추가보증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보증금액	당초 보증금액 그대로 (사유: 보증책임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일부해제를 하지 말라는 공 정위 권고사항)
보증기간	당초 보증기간 이후부터 연장된 보증기간까지 2007.7.1.~2007.7.31

- (4) 공기연장과 증액 보증서 동시 발급시
(공기연장: 2007.7.31.까지, 계약금액 1억원 증액)
· 현행처럼 공기연장보증서를 선 발급(1차) 후 증액보증서를 후발급(2차)

① 공기연장 보증서 선발급방법(1차)

<표 3-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기연장 추가보증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보증금액	당초 보증금액 그대로
보증기간	당초 보증기간 이후부터 연장된 보증기간까지 2007.7.1.~2007.7.31

② 증액 보증서 후발급방법(2차)

<표 3-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중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사비 증액 추가보증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 + 추가계약금액 4억원 = 3억원 + 1억원
보증금액	당초 계약금액과 추가계약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보증금액을 산출한 후 당초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28,571,429원 = (4억원/7(공사기간)×4)-(2억원)
보증기간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 추가보증관련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업무 매뉴얼상 차이점은 공기연장과 보증금액 증액이 동시에 이뤄지는 추가보증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은 당초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보다 추가보증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당초 보증금액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을 결정함
-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의 건설관련 보증에 있어 추가보증은 필수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지침에 의하는 것은 보증사고의 위험성 및 보증수수료 산정에 따른 보증기관의 이익 여부 등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추가보증에 대한 보증기관의 내부지침을 통한 재량적 규율은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하수급인의 공사이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의 예견 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건설공사기간 연장 회피에 따른 부실공사의 증대,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부도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3.5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 조정 필요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 제3조 ‘보증채무 이행한도’규정에서 공제조합이 지급할 보증금 제외 사유중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보증 기간 내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는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공사대금 지급기일(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일에 해당됨)이 보증기간 내 도래하는 지급채무로 제한한 것임
 - 보증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사계약이행기일(공사 종료일)에 3개월을 더해 산정함
- 건설공제조합의 이러한 규정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면,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어음 만기일이 3개월 이상인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인 3개월 이후에 하수급인이 수령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하도급공사의 수취어음 평균 만기일이 3개월 이상인 어음은 전체 어음 중 약 2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어음이 부도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표 3-10> 하도급공사의 수취어음중 평균 만기일이 90일 이상인 어음 비율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어음만기일 90일 이상 어음	33.6	32.9	28.0	24.3	25.5

출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13, 하도급공사의 수취어음 평균 만기일 추이 참조

-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하수급인의 약 24%~34%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보증서 교부 후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을 정함에 있어 공사대금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상환기일까지로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사항

4.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제고방안

4.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발급기한 명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건산법과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부여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수급인은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의 시행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은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수급인은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기한을 명시(30일 이내 발급)함

<표 4-1>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발급기한 명시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3.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 ----- ----- ----- 1.~3. (현행과 같음)

4.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이행보증 청구 제한

- 상호 보증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각의 보증서 교부율 차이가 현저한 것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함
- 계약당사자간 계약이행을 위한 상호 보증원칙상 건설위탁에서 있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은 이러한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한해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을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을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단,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일 경우 또는 보증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 등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는 수급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불이행의 위험이 미약한 경우거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표 4-2>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이행보증 청구 제한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①~⑥ 생략</p> <p>⑦ 제1항에 따른 수급업자의 계약이행</p>

현 행	개 정 안
	보중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단, 원사업자가 면제대상일 경우는 제외한다.

4.2 신용등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삭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바, 이는 하수급인의 계약 이행보증과 쌍무계약적 원칙에 입각한 제도임
- 그럼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예외 규정은 경영상태가 우수한 건설기업의 경우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어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대금 지급 보증이 필요 없다고 보아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면할 수 있음
- 그런데 수급인의 신용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이행도중 신용등급 A 이하로 강등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에서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국토교통부)는 2013. 8 회사채 평가 A 이상 업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¹²⁾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무산됨
- 정부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2013. 6.14)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신용등급이 A등급이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 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따라서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쌍무계약의 법리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업체도 법정관리·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법감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등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표 4-3> 건산법시행규칙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생략)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u>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u> 3~5. (생략)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5. (현행과 같음)

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2013. 8. 1.

4.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정비

-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행정상 강제집행¹³⁾, 행정상 즉시강제¹⁴⁾, 행정조사, 행정벌, 공급거부·행정상의 위반사실의 공표·관허사업의 제한·행정행위의 철회·과징금 등의 간접적 강제수단¹⁵⁾ 등이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확보수단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시정조치)과 이에 대한 행정벌,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해당 규정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태도는 상이함
 - 「건설산업기본법」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의 경우 행정벌과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음
- 결국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부정합성은 해당 공사가 어느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제재에 차이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건설공사의 수급인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시정명

13)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① 대집행, ② 직접강제, ③ 강제금, ④ 행정상 강제징수 등이 있다.

14) 행정상 즉시강제라 함은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에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조치, 소방장애품의 제거 등이 있다. 이상 석종현·송동수, 전거서, 473쪽 이하.

15) 이러한 간접적 강제수단은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벌 등만으로는 현대행정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겨났는데, 이들 수단은 대부분 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권유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의무자가 행정법규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령·시정조치라는 행정처분 외에 의무의행 확보수단으로 과징금만을 두는 것은 사실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법”과 입법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표 4-4> 건산업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시 행정벌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의2(벌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4 추가보증제도의 약관 명시

-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추가보증서의 작성 또는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
- 보증기관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포함한 건설업 관련 보증에 대한 추가보증은 별도의 규정 없이 각 보증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르고 있음
 - 법원은 보증기관의 약관에는 “추가보증제도”가 필수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며, 위반시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내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럼에도 추가보증 제도를 약관이 아닌 내부지침에 의하는 것은 보증 사고의 위험성 및 보증수수료 산정에 따른 보증기관의 이익 여부 등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추가 보증 여부에 따라 잔여공사의 지속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재무건전성 문제 등 사회적 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임
- 따라서 각 보증기관은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 추가보증에 관한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감에 따른 추가 보증 여부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임

4.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명시

-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도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 불능 상태시 보증기간때문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을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로 규정하도록 함(<표 4-5> 참조)

<표 4-5>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명시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u>보증</u> 하고, ----- ----- ----- 1. ~ 3.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u>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u> 하고, ----- ----- ----- 1. ~ 3. (현행과 같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을 명시하면 현재 건설공제조합 약관의 “공제조합이 지급할 보증금 제외 사유중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는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보증 받지 못한 하수급인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임
 - 하도급공사의 수취어음중 보증기간을 초과한(평균 만기일이 3개월 이상) 어음을 수령한 하수급인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하수급인이 수령한 어음중 약 24%~34%를 차지함
-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기간을 공사계약이행기일+3 개월로 선정한 관련 약관에 대해서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보증기간을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까지 규정할 경우 보증기관에 과도한 부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¹⁶⁾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수급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

16) 건설공제조합 의견

해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구상권 회수율이 높지 않아 보증기관의 부담이 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취지는 보증기관의 리스크 측면보다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보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5. 결론

-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하도급간 계약은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공사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의 상호 보증은 이러한 건설계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건설공사는 이러한 공사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을 담보로 하고 있지만, 이마저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1건의 건설공사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수가 160건에 달하기도 함), 지급보증서 교부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된 공사금액분의 지급보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사금액을 온전히 보증 받지 못하는 실정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변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본래의 취지인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연쇄부도, 자금난, 부실공사의 유발 등의 방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활동의 지원 및 보호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2. 김지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방안 관련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분석지원연구 13-25-9, 한국법제연구원, 2013.
3.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4. 이정호·박현석·김영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제12호, 대한건축학회, 1999.
5. 이종광·박승국·홍성진, “건설기업 회생절차 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3.
6.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13
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8.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search/search.jsp>

- 이보라, 연구위원(bora@ricon.re.kr)
- 홍성진, 선임연구원(hongsj@ricon.re.kr)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활성화 방안

2013년 12월 10일 인쇄

2013년 12월 10일 발행

발행인 노재화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13층)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8-89-93645-79-8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3

